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4. 09. 5.
전문위원 한상규

1. 제안이유

○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예산규모 (성북구의회 사무국)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금액	비율(%)
계	5,000		5,000	100
보조금	5,000		5,000	100

○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 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의회사무국	5,000		5,000	
보조금	5,000		5,000	
시.도비 보조금등	5,000		5,000	
청사시설유지관리비(시비)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5,000		5,000	

< 세입예산안 >

- 2024년 제1회 성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백만원으로
-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개정(2023.07.21.)에 따른 비상벨 의무 설치
- 규정으로 성북구의회 청사 화장실에 대한 안전시설(비상벨) 설치 사업비 총 1천만원중 시비보조금 5백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안(총괄)

(단위: 천원)

회계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	증감	
			금액	비율(%)
계	4,530,202	4,418,681	111,521	2.5
지방의회운영지원	2,466,250	2,354,729	111,521	4.7
행정운영경비	2,063,952	2,063,952		

○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A-B)	비고
의회사무국		4,530,202	4,418,681	111,521	
지방의회운영지원		2,466,250	2,354,729	111,521	
	의회운영 내실화 - 증편성	2,293,910	2,182,389	111,521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1,748,169	1,662,569	106,600	
	의원정책개발비 - 감액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40,000	60,000	△20,000	
	의회운영기본경비지원 (인건비 : 기간제보수등)	453,586	448,660	4,926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및부대비 (시설비:공중화장실 비상벨 청사수도관개선)	92,156	71,160	20,995	

< 세출예산안 >

- 성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4억 1천 8백 6십만원 대비 약 1억1천 1백 5십만원이 증액된 45억3천2십만원으로
 - 세부적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중 의회운영내실화 비용에서 총 약 1억1천 1백5십만원이 증액되었고

- 증액된 예산은 의정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기간제보수, 공중화장실 비상벨
의회청사 수도관개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예산등 1억3천1백5십만원이며,
- 감액된 예산은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비가 기존 6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예산임

3. 검토내용

-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성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증액된 1억1천 1백5십만원은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공청회와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분 지급을 위해 증액편성된 1억5백,6십만원이며
- 공휴일 등 대외 의정활동 수행 등의 업무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4백9십만원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3.07.21.)에 따른 의무 설치 규정으로 성북구 의회 화장실 비상벨 설치 시.보조금 5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천만원중 구비 5백만원과,
- 의회건물 구조상 수압이낮아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수도관 개선 예산 5백만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1천5백9십만원 입니다.
- 감액된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2024년 의원연구단체」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이 당초 3개 연구단체에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개 연구단체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추경합

○ 이번 예산안은 세입예산 시보조금 5백만원과 세출예산으로는 의정활동비, 의원정책 개발비, 기간제보수, 공중화장실 비상벨의회청사 수도관개선 예산 1억3천1백 5십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또한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연구용 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¹⁾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